서울대학교 대량메일 운영 지침

제정 2011. 11. 28. 개정 2015. 06. 01. 개정 2020. 02. 01.

제1조 (목적)

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운영하는 대량메일 발송 시스템에 의해 전송되는 메일의 이용·운영 절차 및 제반 사항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용어정의)

- ① '대량메일'이란 학내 기관이 정보화본부에서 제공하는 대량메일 발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메일을 말한다.
- ② '대량메일 발송 시스템'이란 특정한 목적(홍보, 안내, 연구, 설문 등)을 위해 한 번의 발송으로 다수의 수신자에게 메일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- ③ '스팸메일'이란 「서울대학교 포털 운영 지침」 제5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- ④ '기관 관리자'란 이용 기관에서 대량메일 관리자로 지정한 자로서, 소속 기관의 사용자에게 대량메일 작성 및 발송 권한을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.
- ⑤ '승인 관리자'란 이용 기관에서 대량메일 발송을 허용하는 자로서, 작성된 대량메일 콘텐츠의 내용을 심의하고 발송을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.
- ⑥ '2차 승인 관리자'란 이용 기관의 대량메일 수신 범위가 소속 구성원을 초과하여 발송되는 경우 해당 대량메일의 발송을 승인하는 자를 말한다.
- ⑦ '사용자'란 이용 기관의 기관 관리자를 통해 대량메일 작성 및

발송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.

제3조 (이용 기관)

- ① 대량메일의 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1. 「서울대학교 학칙」에 명시되어 있는 학내 기관
 - 2. 「서울대학교 정관」에 명시되어 있는 심의기구 및 관련법인
 - 3. 서울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는 자가 기관장인 기타 조직
 - 4. 서울대학교 재직 교원 및 직원이 회원 및 조합원으로 운영되는 단체

제4조 (수신 대상)

- ① 대량메일의 수신 대상은 이용 기관 내 구성원으로 한정하나,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 - 1. 학사행정 관련 공지 및 홍보
 - 2. 교육·학술·연구 목적의 메일 및 설문조사용
 - 3. 서울대학교 공식 소식지 (SNU NOW) 발송
 - 4. 교수협의회, 노동조합 등 회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의 회원 대상 공지
 - 5. 이용 기관에서 보유한 주소록에 의한 발송

제5조 (기관 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)

- ① 이용 기관의 장은 소속 교직원 중 1인을 기관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- ② 이용 기관의 기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
 - 1. 대량메일 작성 및 발송하고자 하는 소속 기관의 사용자 등록
 - 2. 인사이동 등으로 사용자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삭제
 - 3. 대량메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등록된 사용자 상시 관리

제6조 (승인 관리자의 지정 및 책무)

① 이용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 중 1인을 승인 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1. 본부 각 과장
- 2. 대학(원)의 행정실장
- 3. 부속시설의 각 과장 또는 팀장
- 4. 부속시설(부설학교포함) 및 행정실장이 없는 대학(원)의 서무주무자
- 5. 위 호의 직원이 없는 기관은 이용 기관의 장
- ② 이용 기관의 승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.
 - 1. 이용 기관의 대량메일 콘텐츠에 대한 심의 및 발송 승인
 - 2. 이용 기관의 기관 관리자 관리 · 감독

제7조 (신청 절차 및 관리)

- ① 대량메일을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 기관의 장은 기관 관리자 및 승인 관리자를 지정하여, 정보화본부에 공문으로 대량메일 사용신청을 해야 한다. 단, 신청 시 "스팸메일 관리 동의서"(서식 1)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.
- ② 정보화본부는 제1항의 기관 관리자를 등록하여 각 이용 기관의 대량메일에 대한 관리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.
- ③ 이용 기관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기관 관리자나 승인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보화본부에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기관 관리자는 해당 기관 소속의 교직원에 한하여 대량메일 작성 및 발송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.
- ⑤ 이용 기관 소속의 교직원은 대량메일 작성 및 발송이 필요한 경우, 해당 기관 관리자에게 사용자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8조 (발송 관리)

- ① 이용 기관별 대량메일은 1일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같은 날 1회 이상 발송이 필요한 경우, 정보화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대량메일 작성자는 승인 관리자에게 콘텐츠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대량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. 단, 서울대학교 정관에서 정한 법인과 그 외기타 기관이 이용 기관 소속 구성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량메일을 발송할 경우, 2차 승인 관리자의 승인을 얻어야한다. 이용 기관별 2차

승인 관리자는 [첨부 1]에 따른다.

- ③ 승인 관리자는 대량메일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, 발송을 불허해야 한다.
 - 1. 이용 기관과 대량메일 콘텐츠에 명시된 발송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
 - 2.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
 - 3.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일
 - 4.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를 위반한 경우
 - 5.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
 - 6. 기타 수신자의 신고에 의해 스팸 메일로 인정되는 경우
- ④ 대량메일 콘텐츠 및 발송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이용 기관에게 있다.

제9조 (이용 제한)

①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메일이 발송된 경우, 정보화본부장은 해당 메일 송신을 차단하고 이용 기관의 대량메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0조 (서비스 기록 관리)

- ① 대량메일 발송 시스템 상의 기록 보관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.
 - 1. 대량메일 콘텐츠 : 발송일로부터 3년
 - 2. 이용기관의 수신처 주소록 : 이용기관의 최종 이용일로부터 2년
 - 3. 시스템 운영 기록(Log) : 기록 생성일로부터 180일

〈부 칙〉

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스팸메일 관리 동의서

- 본 기관은 서울대학교 정보화본부에서 운영하는 대량메일 발송 시 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메일에 관하여 스팸메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,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.
- 본 기관은 무차별적인 스팸메일이 대량메일로 전송되지 않도록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, 메일 발송 현황을 상시 확인, 감독할 것에 동의합니다.

기 관 명	
직 위	
기관장명	

[첨부 1] 이용 기관별 2차 승인 관리자

	이용기관	2차 숭인 관리자
	서울대학교병원	기획처장
	서울대학교치과병원	기획처장
	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	연구처장
	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	학생처장
	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	기획처장
	재단법인 사회과학정보화교육연구재단	사회과학대학 학장
	재단법인 서울대학교공과대학교육연구재단	공과대학 학장
관	재단법인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교육연구재단	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
- 법	재단법인 서울대학교법학발전재단	법학전문대학원 원장
) 인	재단법인 서울대학교사범대학교육연구재단	사범대학 학장
L	재단법인 서울대학교약학대학교육연구재단	약학대학 학장
	재단법인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육연구재단	의과대학 학장
	재단법인 서울대학교치의학대학원교육연구재단	치의학대학원 원장
	재단법인 서울대학교보건연구재단	보건대학 학장
	재단법인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소천교육연구재단	국제대학원 원장
	재단법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	융합기술대학원 원장
	사단법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	연구처장
기 타 기 관	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	교무처장
	서울대학교 여교수회	교무처장
	서울대학교 총동창회	학생처장
	서울대학교 노동조합	사무국장
	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	사무국장
	호암교수회관	학생처장
	서울대학교 포스코스포츠센터	학생처장

[※] 교수협의회, 노동조합 등에서 대량메일 발송 시 회원 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용 기관 승인으로 가능, 단, 수신 범위가 회원 또는 조합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차 승인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.